

가축분뇨(우분)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

한국수자원공사

1. 규제특례 명칭 및 내용

- 가축분뇨(우분)와 자연재해 폐목 등을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

2. 규제특례 구역·기간 및 규모 등 기준

- (구역) 영주축협 생축사업소(경북 영주시 부석면 감곡리 992)
- (기간) 2025.04.30. ~ 2027.04.29.(2년)
- (규모) 우분 6톤/일 처리, 고체연료 2톤/일 생산

3.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인 조건

- 주원료(우분)와 보조원료간 최적의 배합비율을 도출하되, 우분을 가능한 50% 이상 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- 댐 수거 녹조, 부유물 등의 수급방안 및 고체연료 성분 불균일로 인한 연료 효율 저하 등에 대한 대책 제시
- 사업개시 전 고체연료 제조시 환경성(악취, 폐수 등)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, 필요시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사전에 구축할 것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

-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의하는 배상 기준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

5. 그 밖에 장관이 신기술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- 사업자는 환경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-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을 시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를 것